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전복양식보험 시범사업 실시

-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5월부터 전복(생물) 및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전복양식보험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함.
- 2009년 말 기준 2천 474가구의 전복(생물) 및 해상가두리양식 어가 중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.
 - 3억원의 주계약과 1억원의 시설물특약으로 이루어진 총 4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약 276만원으로 설계됨.
 -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, 강풍, 해일, 풍랑, 적조 등과 이로 인한 수산질병, 패각괴사증, 근육위축증, 복부팽만증, 요각류감염증, 스쿠티카감염증 등이며, 기상청의 기상특보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적조특보 발효기준에 의해 피해 여부를 판정함.
 - 향후 완도, 진도 등 전복의 주요 생산지에서 상품설명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럭, 굴, 김 등의 유사상품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.
- 정부와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는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양식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, 저렴한 보험료로 더 큰 혜택의 보험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함.
- 피해액의 절반 정도만을 보상받던 기존의 재난지원금 제도와는 달리 전복양식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피해액 수준의 보험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.
 - 전복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수량에 '적용가격'을 곱하여 보상액을 산출하며 양식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비 보상을 원칙으로 함.
 -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해당하는 어업인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의 50%를 국고보조로 하고 있으며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.
 - 보험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10~30%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차금하고 보험금을 지급함.

(양식 전복, 세계 최초로 재해보험시대를 열었다,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, 4/30)